

경기 미니테크노파크 지역특화사업센터 규정



한국항공대학교

개정 기록표

번호	개정일자	개정자 (서명)	번호	개정일자	개정자 (서명)
1			16		
2			17		
3			18		
4			19		
5			20		
6			21		
7			22		
8			23		
9			24		
10			25		
11			26		
12			27		
13			28		
14			29		
15			30		

경기 미니테크노파크 지역특화사업센터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센터는 「한국항공대학교 경기 미니테크노파크 지역특화사업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 (목적) 센터는 경기 북서부 권역의 지역밀착형 지식산업 기반창출을 위하여 지역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지역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경기 북서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센터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기업지원 전략기획, 기업 멘토링, 정책개발용역, 연구개발사업교육, 지역혁신 클러스터 구축 등의 지역산업 구조고도화
2. 산학연관 네트워크 구축, 인력양성 및 창업지원, 마케팅·홍보, 기업지원, 기술개발 지원 등의 지식기반 첨단사업 경쟁력 강화
3. (재)경기테크노파크의 경기도 미니테크노파크 사업단 지원
4. 기타 센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 (소재) 센터는 한국항공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내에 둔다.

제2장 조직

제5조 (센터장) ① 센터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센터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③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운영위원회) ① 센터의 운영전반을 심의하고 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간사위원을 포함한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며, 간사위원은 연구협력팀장(산학협력단 사무국장)이 된다.

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본교 교직원

2. 경기도 또는 경기 북서부 권역의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3. (재)경기테크노파크 등 경기도 또는 경기 북서부 권역의 기업지원기관 소속 임직원
4. 지역협력, 산학협력, 연구개발, 경영컨설팅, 정책 등의 분야에서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
- ⑤ 제4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사무국) ① 센터는 센터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② 총장 또는 산학협력단장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무국의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③ 총장 또는 산학협력단장은 제3조 제3호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하여 소속 직원을 (재)경기테크노파크에 파견하거나 겸직하게 할 수 있다.
- ④ 직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본교 또는 산학협력단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8조 (전략기획단) ① 센터는 경기 북서부 권역의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운영, 인력, 기술, 사업화 등에 대한 애로현안을 해결 또는 지원하기 위하여 전략기획단을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략기획단은 다음 각호의 전문인력으로 구성한다.
 1. 지역전문가
 2. 산학협력전문가
 3. 경영컨설팅전문가
 4. 연구개발사업전문가
 5. 정책전문가
 6. 행정지원인력

제9조 (네트워크지원단) ① 센터는 경기 북서부 권역의 기업 클러스터 구축전략 개발, 업종별 분과 및 이업종교류회 구성·운영 등을 위하여 네트워크지원단을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네트워크지원단은 본교와 경기 북서부 권역의 산·학·연·관 전문인력으로 구성한다.

제10조 (지역특화사업단) ① 센터는 지역특화 지식기반 첨단산업에 대한 지원전략을 수립하고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특화사업단을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특화사업단은 지역기반의 기업지원기관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3장 재정 및 운영

제11조 (재정) 센터의 재정은 정부 지원금, 창조금, 기타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12조 (회계 등) 회계, 출납 등에 관한 사항은 제11조에 따른 재정 지원기관의 규정에 따라 수행하며, 그밖의 사항은 본교 또는 산학협력단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 (기타)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7월 21일부터 시행하되, 2012년 3월 29일부터 적용한다.